



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

수신 건설현장 관계자 귀하

(경유)

제목 안전검사 수검 및 미수검품 사용금지 안내

1.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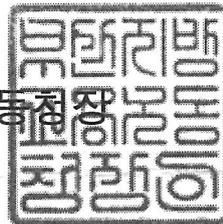
2. 차량 등록일(구조변경일)이 '97.10.30.까지 등록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*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라 '17.10.31.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, 현재까지 수검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

* 이동식 크레인(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), 고소작업대(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)

2. 이에, 귀 현장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'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'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용 전 안전검사 수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안전검사제도 참고자료 1부 끝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



근로감독관

심현섭

과장

전결 2017. 10. 27.

박래식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14341 (2017. 10. 27.) 접수

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6 (연산동, 부산지방노동청) / <http://moel.go.kr/busan>

전화번호 051-850-6477 팩스번호 051-851-7424 / simhs@korea.kr / 비공개(7,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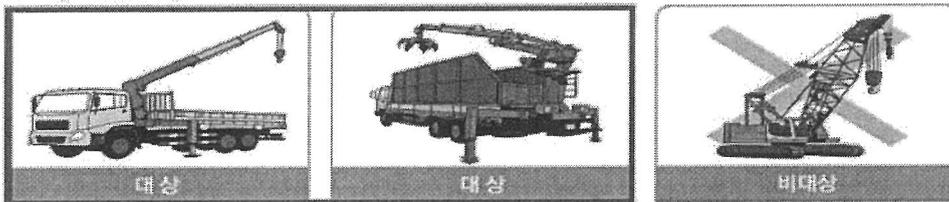
□ 안전검사 취지 및 개념

-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
 -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(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)

□ 안전검사 대상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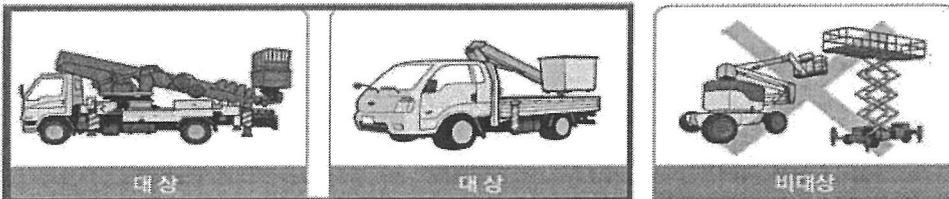
①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

-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 하중 2톤 이상인 것(다만,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)



②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

-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(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·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)에 한정하여 적용



- 테일 리프트(tail lift),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,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는 제외

□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검사기한 및 주기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일(구조변경일) 기준
 -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은
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
 -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은
2018년 4월 30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
 -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등록 차량은
2018년 10월 31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
 - 2015년 11월 2일부터 등록 차량은
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